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

제출년월일 : 199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994. 9. 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3호 및 부칙 제2항 규정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수수료를 당해 지방 자치 단체가 정하게 되었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이 누락되어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에 〔별표 1〕 중 보건사회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신설 및 문화공보관계에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신설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의 아. 보건사회관계란의 (6) 유기장영업허가중 재교부 란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동	읍·면	
(7) 의료기관개설허가				
(가)종합병원	1 건	70,000	70,000	
(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	1 건	50,000	50,000	
(8)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40,000	40,000	
(9)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포함)	1 건	30,000	30,000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종합병원	1 건	60,000	60,000	
(나) 병 원	1 건	30,000	30,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동	읍·면	
(1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건	20,000	20,000	
(12) 안경업소 개설 등록	1 건	20,000	20,000	
(13)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 건	20,000	20,000	
(14)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20,000	20,000	
(15)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 건	20,000	20,000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자. 문화공보관계란의 (13)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동	읍·면	
(14)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사항 변경	1 건	2,500	2,50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 정 이 유</th></tr>
<tr><td>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등

(신 설)</td><td>〔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요 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동</th><th>읍 · 면</th></tr>
<tr><td>(7) 의료기관개설허가</td><td></td><td></td><td></td><td></td></tr>
<tr><td>(가) 종합병원</td><td>1 건</td><td>70,000</td><td>70,000</td><td></td></tr>
<tr><td>(나)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td><td>1 건</td><td>50,000</td><td>50,000</td><td></td></tr>
<tr><td>(8)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td><td>1 건</td><td>40,000</td><td>40,000</td><td></td></tr>
<tr><td>(9)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td><td>1 건</td><td>30,000</td><td>30,000</td><td></td></tr>
<tr><td>(10)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td><td></td><td></td><td></td><td></td></tr>
<tr><td>(가) 종합병원</td><td>1 건</td><td>60,000</td><td>60,000</td><td></td></tr>
<tr><td>(나) 병 원</td><td>1 건</td><td>30,000</td><td>30,000</td><td></td></tr>
<tr><td>(1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td><td>1 건</td><td>20,000</td><td>20,000</td><td></td></tr>
<tr><td>(12) 안경업소 개설 등록</td><td>1 건</td><td>20,000</td><td>20,000</td><td></td></tr>
<tr><td>(13)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td><td>1 건</td><td>20,000</td><td>20,000</td><td></td></tr>
<tr><td>(14) 치과기공소 인정</td><td>1 건</td><td>20,000</td><td>20,000</td><td></td></tr>
<tr><td>(15)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td><td>1 건</td><td>20,000</td><td>20,000</td><td></td></tr>
</table></td><td>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994.9.27. 보건사회부령제945호)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 3호 및 경과조치 규정중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의 수수료를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되어 조례에 신설코자 함.</td></tr>
</table>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 정 이 유</th></tr>
<tr><td>(신 설)</td><td>[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요 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동</th><th>읍 · 면</th></tr>
<tr><td>자. 문화공보 관계
(14)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td><td>1 건</td><td>2,500</td><td>2,500</td><td></td></tr>
</table></td><td>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이 누락되어 조례에 신설코자 함.</td></tr>
</table>

의료법 · 조례 대비표

의 료 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1 건	50,000	
- 병 원	1 건	30,000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3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포함)	1 건	20,000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			
- 종합병원	1 건	40,000	
- 병 원	1 건	20,000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건	10,000	
○안경업소 개설 등록	1 건	10,000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10,000	
○안경업소 변경 신고	1 건	5,000	

조 례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동	읍 · 면	
(7) 의료기관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1 건	70,000	70,000	
(나)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1 건	50,000	50,000	
(8)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40,000	40,000	
(9)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치의원,한의원, 조산원,안마시술소포함)	1 건	30,000	30,000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				
(가) 종합병원	1 건	60,000	60,000	
(나) 병 원	1 건	30,000	30,000	
(1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변경 신고	1 건	20,000	20,000	
(12) 안경업소 개설 등록	1 건	20,000	20,000	
(13)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	1 건	20,000	20,000	
(14)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20,000	20,000	
(15)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	1 건	20,000	20,000	

大學·綜合病院 또는 外國醫療援助機關에게 保健醫療業務를 囑託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6·5·10〉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囑託을 받은 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囑託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定하는 報酬 및 旅費를 그 醫療囑託을 받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第63條 (經費補助등)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國民保健向上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醫療人·醫療機關·中央會 또는 醫療關聯團體에 대하여 施設·運營經費 또는 調査硏究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全文改正 94·1·7〕

第63條의2 (聽聞) 保健社會部長官·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5條, 第50條, 第51條第1項, 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 또는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處分의 相對方이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7〉

〔本條新設 87·11·28〕

第63條의3 (手數料) ①이 法에 의한 醫療人의 免許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國家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7〉

②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 國家試驗應試手數料를 保健社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試驗管理에 필요한 經費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新設 94·1·7〉

〔本條新設 87·11·28〕

第64條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國立保健院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나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7〉

(수 47)

●의료법시행규칙〔1973·10·17 보건사회부령제426호전문개정〕

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제437호
1975·12·2 보건사회부령제502호
1976·12·29 보건사회부령제543호
1978·5·15 보건사회부령제595호
1981·9·21 보건사회부령제689호
1982·12·31 보건사회부령제717호
1986·6·25 보건사회부령제790호
1986·12·4 보건사회부령제794호
1989·2·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서식중본적란식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1990·1·9 보건사회부령제840호
1992·1·16 보건사회부령제887호
1993·3·3 보건사회부령제901호
1993·8·20 보건사회부령제913호
1994·9·27 보건사회부령제945호
1996·12·3 보건복지부령제 38호

제1장 면 허

제1조 (시험과목등) ①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4·9·27〕

제2조 삭제 〈90·1·9〉

제3조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

(주 79)

1. 면허증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0·1·9, 94·9·27, 96·12·3〉

제7조 (수수료)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4·4·10, 90·1·9〉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7〉

③삭제 〈94·9·27〉

④특례시험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1. 치과의사·한의사 : 3만원
2. 조산사·간호사 : 2만원

⑤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12·26, 94·9·27, 96·12·3〉

⑥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특례시험 및 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신설 94·9·27, 96·12·3〉

제8조 삭제 〈94·9·27〉

제9조 (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①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1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

(추 79)

부 칙 〈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79)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7·16〕

제11조 (시술소 개설신고의 특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술소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안마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10·22〕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는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령규칙중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 제19조, 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5, 제22조, 제22조의2제 1 항제 3 호·제 4 호·제 2 항, 제24조, 제29조, 제33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본다. 〈개정 96·7·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술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규모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안마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 1 조중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제58조 및 제60조"로, "침사·구사 및 안마사"를 "침사 및 구사"로 한다.

제 2 조제 6 항을 삭제한다.

제 9 조를 삭제한다.

(추 7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6·10·31 보건복지부령제34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치과기공소의 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일 것
3.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모터 2대이상
   라. 아세틸렌세트 1세트이상
   마.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바. 전기로 1대이상
   사. 포설린로 1대이상
   아.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자. 서베이어 1대이상
   차. 진동기 1대이상
   카. 트리머 1대이상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추 78)

④치과기공소개설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지도치과의사 또는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치과기공소인정서
2.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1. 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제4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추 78)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치과기공소	명 칭			
	소 재 지			
개설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지도치과의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허 번 호	
종사할 치과기공사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31312-06711민 210㎜×297㎜
96. 5. 3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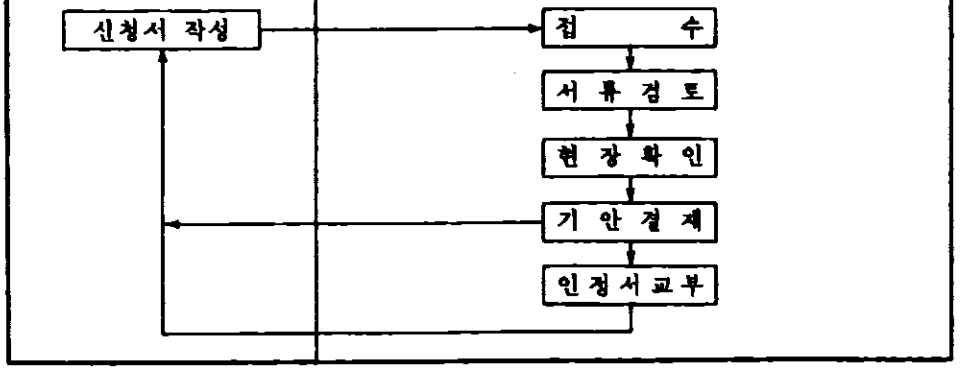

(수 78)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치과기공소	명 칭			인 정 서 번 호
	소 재 지			
양도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면허번호			
	주 소			☎( ) -
양수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면허번호			
	주 소			☎( ) -
종사하는치과기공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인정서
2. 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31312-48411민 210㎜×297㎜

96. 5. 3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 접 수
		↓ 서 류 검 토
		↓ 인정대장 및 인정서 정정
		↓ 인 정 서 교 부
	교 부	

(추 78)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②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경업소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15조 (안경업소의 안경사·시설기준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에는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40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40건마다 개설자인 안경사외에 안경사 1인씩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안경업소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업소의 바닥면적은 조제실 및 측정실을 포함하여 16.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p.d.)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후 78)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안경업소	명 칭			
	소 재 지			
개설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종사 안경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31312-27011민
96. 5. 3 개정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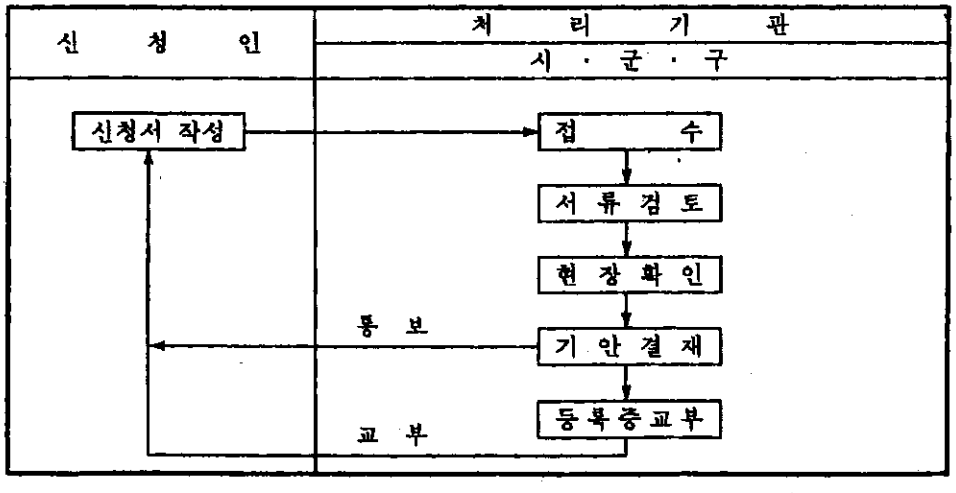

(추 78)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안경업소	명 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 소		☎( ) -	
양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 소		☎( ) -	

종사 안경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안경업소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31312-48511민
96. 5. 3 제정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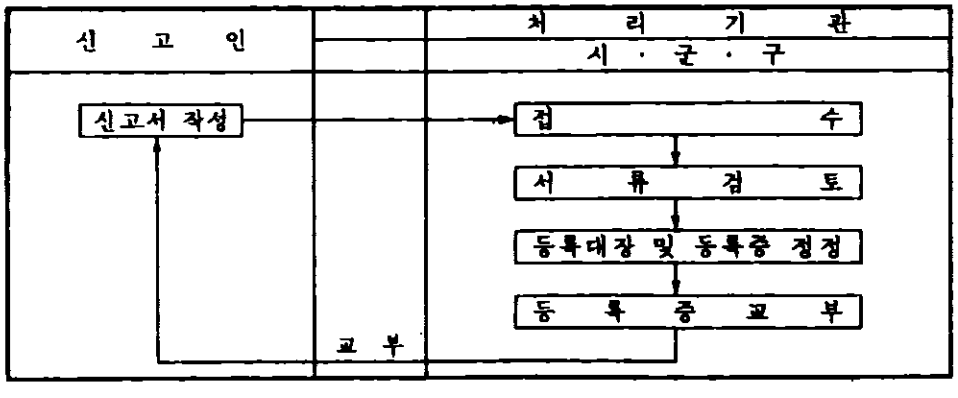

(추 78)

" 으뜸 파주 · 일등 경기 · 일류 한국 "

파 주 시

우 413-02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940-4284 FAX940-4289 담당 최희진

문서번호 세무 13388 -762

시행일자 1997. 3. 19. (3년)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취 급		시 장
보 존		
부 시 장	전 결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자치계장
기 안	최희진	세외수입계장

제목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니 별첨 예고문을 주민이 잘볼수 있도록 1997. 3. 19. ~ 1997. 4. 7. (20일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2. 주민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시 이를 취합하여 세무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3. 문화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시정뉴스에 게재하여 여러사람들이 공람할수 있게 하시기 바람.

별첨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서
1997 3. 19
심사인

파 주 시 장

받는곳 노, 도, 로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시 보

제 31 호

1997년 4월 3일(목)

차 례

조 례

○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 1

○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 4

공 고

○ 파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파주시공고제97호) ———— 8

회람								

파 주 시

우 413-02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940-4284 FAX940-4289 담당 최희진

문서번호 세무 13388 -

시행일자 1997. 4. 8. (3년)

받음 내 부 결 재

참조

취 급		시 장
보 존	(3 년)	
부 시 장		
총무국장		세외수입계장
세무과장	전 결	
기 안	최희진	

제목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1. 세무 13388-762('97. 3. 19.)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97. 3. 19. ~ 4. 7. (20일간)까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서 접수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파 주 시 장

'정의한 도정, 세계속의 경기'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 수원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249-2423(2423)/FAX:249-2428 담당:함승원

선결	보건성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6 11 21	결재·공람	계사	
	번호				
처리과					
담당자					

문서번호 보건 65501 - 4006

시행일자 1996. 11 . 20 .(3 년)

(경 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조례제정 현황 통보

1. 보건 65501- 4707('96. 10. 30)호와 관련임니다.

2. 관련도로각 시.군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안경업소 양도 양수 및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된 시.군에서는 추가로 제정하시고 치과기공소 장소이전 및 안경업소 장소이전등 변경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수수료를 발용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조례제정 현황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받는곳 : 시(보건소장)

의료기관 개설신고등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기 준	현 행	비 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1 건	종합병원 50,000 병 원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30,000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포함)	1 건	20,000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 건	종합병원 40,000 병 원 2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10,000	
안경업소 개설 등록	1 건	10,000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10,000	
안경업소 변경신고	1 건	5,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조례제정 현황

○ 조례명 : ○○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군별	제정일자	수수료(원)					비고
		의원개설신고	의원장소이전	의원변경신고	치과기공소인정	안경업소등록	
의정부시	96. 1. 18	30,000	20,000	10,000	20,000	20,000	
평택시	96. 5. 1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동두천시	96. 1. 16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오산시	96. 1. 17	23,000	12,000	12,000	23,000	12,000	
하남시	96. 10. 25	20,000	10,000	-	2,000	10,000	
이천시	96. 7. 10	34,000	25,000	25,000	25,000	25,000	
양주군	96. 1. 11	20,000	10,000	-	10,000	10,000	
광주군	96. 8. 12	30,000	20,000	-	20,000	20,000	
연천군	96. 9. 20	23,000	12,000	12,000	2,300	12,000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치과기공사 양도.양수 신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조례로 제정해야 함.

※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장소이전,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 없음.